

#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1997. 7. 2

발 의 자 : 리희찬 외3인

## 1. 주 문

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출석요구대상 : 시장 및 관계공무원
- 출 석 일 시 : 1997. 7. 14 ~ 7. 16